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 11 조제 2 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3 제 4 항·제 6 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.

1. 상 호 명 : (유통업체) 대흥화학공업(주), (제조업체) (주)마가켄

2. 대 표 자 : (유통업체) 이춘남, (제조업체) 임현석

3. 주 소 : (유통업체) 경기 평택시 산단로 15 번길 52
 (제조업체)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단 5 로 130

4. 대상 건축자재 :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v] 실란트(sealant), [] 퍼티(putty), [] 벽지,
 [] 바닥재, [] 기타()

5. 면제 제 품 명 : AD-4000
 (접수번호 : M282-18-00631)

6. 유효 기 간 : 2018 년 4 월 11 일 ~ 2021 년 1 월 26 일

확 인 받 은 건 축 자 재	제 품 명	마가실(MG-101)
	인 증 번 호	HB2055E18-01
	시 험 기 관	한국공기청정협회 HB 마크 시험기관
	유 효 기 간	2018 년 1 월 27 일 ~ 2021 년 1 월 26 일

2018 년 4 월 11 일

FITI 시험연구원장



※ 문서 확인 번호 : L9C5-LMUQ-QI1J ※

홈페이지에 접속 후 "성적서확인"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